

# 서울 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07
----------	------

2024년 9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 상정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9월 4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서울시민 대상 수어인구 확대를 위한 수어교육 지원 사업으로 2024년 12월 31일자로 협약 만료됨.(’ 22.1.1.~’ 24.12.31.)
- 서울시민 대상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수어교육 운영으로 수어에 대한 이해 확대와 공인수어통역사 및 전문수어통역사 양성으로 농아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하고자 수어교육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 농아인들의 자립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수행 필요.

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  
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 전문수어교육으로 공인수어통역사 양성
- 전문영역 강의를 통한 수어통역사 역량강화
- 청각장애인 강사와의 만남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 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 시민 교육 등

나. 위탁범위 : 사무운영,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다. 위탁기간 : ' 25. 1. 1. ~ ' 27. 12. 31.(3년)

### 라. 운영개요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금 (백만원)
서울수어전문 교육원	서대문구 경기대로 15엘림넷 5층	한국농아인 협회 서울시협회	'09.4.13.~ '24.12.31. (7회)	'22.1.1.~ '24.12.31. (7회)	613('24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24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의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sup>1)</sup>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2 동의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농인 및 수어 관련 현황

-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대화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① 입모양의 변화에 따라 말을 이해하는 '구화-독화'에 의한 대화방법 ② 손으로 단어나 문장을 표현하는 수어(手語), 손가락으로 한글의 자모를 표시하는 지화(指話) ③ 비장애인과 대화할 때 글을 쓰는 필담으로 구분할 수 있음.<sup>2)</sup>
-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 중 수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인'이라고 하며, 서울시 농인 현황은 별도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권정숙·김두영·신희정. "청각장애성인의 생애주기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교육·복지 요구분석". 성인계속교육연구 14:2(2023.6.30.)

서울시의 청각장애인 수는 약 63,000명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지회에 등록된 회원은 약 2,000명으로 파악됨.

-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2023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 에 따르면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하는 만 20세 이상 청각장애인은 30.1%로 나타남.

<표> 연령대별 수어 사용현황<sup>3)</sup>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수어 사용	30.1%	32.1%	60.7%	69.9%	55.3%	19.3%

- 사회적 인식 개선에 따라 수어교육의 수요가 증가<sup>4)</sup>하고, 2022년 「한국수화언어법」의 개정으로 재난 질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발표에 수어통역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개정되는 등 수어교육의 중요성 및 수어사용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sup>5)</sup>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에서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농인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수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에 공정하고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됨. 따라서, 수어를 보급하고 수어 사용환경을 구축·개선함으로써 농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수어는 2016년 「한국

3) 국립국어원, 「2023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 결과 요약」

4) 전국수어통역센터 수어 학습자 수 : (2020년) 31,572명→ (2021년) 40,712명

5) 문화체육관광부(2023).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

수화언어법」 시행 이후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으면서 사회적 위상이 강화되었음.

#### 나.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법적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점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목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임.
-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해당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해당 업무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수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관으로의 위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 사무 민간위탁 추진경과

-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의사소통이 어려운 농인 및 수어사용자를 위하여 전문수어교육을 통해 수어통역사를 양성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을 운영해왔으며, 그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음

<표>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위탁경과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위탁	'09.4.13~'09.	'10.1.1~'10.1	'11.1.1~'13.1	'14.1.1~'15.1	'16.1.1~'18.1	'19.1.1~'21.1	'22.1.1~'24.1
기간	12.31 (공모)	2.31 (공모)	2.31 (재계약)	2.31 (재계약)	2.31 (재계약)	2.31 (공모)	2.31 (재계약)
수탁자	(사)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 라.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현황 및 평가결과

- 2024년 현재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운영법인 :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회장 허정훈)
- 소재지 : 서대문구 경기대로 15(엘림넷빌딩 5층)
- 규모 : 임차면적 703.212㎡ (지상 5층)
- 위탁기간 : ' 22.1.1.~' 24.12.31.(최초위탁일 : '09.4.13.)
- 종사자 : 5명 (원장 1명, 직원 4명) ※ 강사 18명
- 24년 예산 : 612,064천원 (시비 100%)

- 서울수어전문교육원에서는 현재 6개의 교육장을 활용해 총 57개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수강인원은 '23년도 기준 7,941명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표>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4,309명	7,827명	7,941명

- ‘24년 실시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는 81.82점(전체 배점의 75점 미만시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해당 평가에서는 수어 교육과정이 단계별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취업으로 연결한 실적 등을 우수사항으로 평가하고 있음.
- 개선요청사항으로는 기관의 환경변화, 조직관리방향 등을 문서로 정리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 최근 2년간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미비, 결산보고서 부속명세서 첨부 등 사업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연속적인 지적사항이 나오는 점, 수화통역사 자격취득 후 취업과 연계한 실적의 체계적 관리필요성 등이 지적되었음.
- 동 사무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적정 등급을 받았으나, 권고사항으로 기본과정·통역과정의 수강인원 및 농아인 수강비율을 제고하고 ’23년 기준 32%인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합격률<sup>6)</sup>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있었음.

6) 연도별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합격자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육원 합격자 (누계)	21명 (269)	40명 (309)	12명 (321)	17명 (338)	5명 (343)	13명 (356)
합격률	39%	28%	27%	20%	20%	32%
전국 합격자	54명	144명	44명	83명	25명	41명

### 3 종합의견

- 서울시에서 수어교육과 관련된 사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 따르면 기존 위탁기관이 다년간의 위탁사무 수행 경험에도 불구하고 예산업무처리 등에서 지속적인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가 제기되었음.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위탁기관 선정 시 해당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향후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07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민 대상 수어인구 확대를 위한 수어교육 지원 사업으로 2024년 12월 31일자로 협약 만료됨.('22.1.1.~'24.12.31.)
- 나. 서울시민 대상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수어교육 운영으로 수어에 대한 이해 확대와 공인수어통역사 및 전문수어통역사 양성으로 농아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하고자 수어교육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 농아인들의 자립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수행 필요.
- 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 전문수어교육으로 공인수어통역사 양성
  - 전문영역 강의를 통한 수어통역사 역량강화
  - 청각장애인 강사와의 만남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 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 시민 교육 등
- 나. 위탁범위 : 사무운영,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 다. 위탁기간 : '25. 1. 1. ~ '27. 12. 31.(3년)

## 라. 운영개요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금 (백만원)
서울수어전문 교육원	서대문구 경기대로 15엘림넷 5층	한국농아인 협회 서울시협회	'09.4.13.~ '24.12.31. (7회)	'22.1.1.~ '24.12.31. (7회)	613('24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이성준(☎2133-7641)